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급여법」 개정(‘20.4.7)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연계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보장기관(지방자치단체)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(주민등록전산정보, 지방세 체납정보)를 규정(안 제7조 개정)
- 복지부장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요금 연체정보의 기준(3개월 이상 연체)을 규정(안 제8조 개정)
-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전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별표2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8호”를 “법 제11조제1항제8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
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정보

제8조제1항 중 “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”을 “대출금·신용카드대금의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체정보 또는 3개월 이상 통신요금이 연체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제7호”를 “법 제12조제1항제9호”로 한다.

제28조제6호 중 “법 제10조”를 “법 제9조의2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입수된 사람의 가구에 대한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) <u>법 제11조제8호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) ① <u>법 제11조제1항제8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</u> 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정보
제8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 ① <u>법 제12조제1항제6호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”란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<u>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</u>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.	제8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출금·신용카드대금의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</u> 경우의 연체정보 또는 3개

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
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
③ (생략)

제2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제26
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
자를 포함한다) 및 보장기관의
장(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
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
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
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
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
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
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
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
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
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
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
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

월 이상 통신요금이 연체된 --

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9조의2-----

에 관한 사무 7. ~ 17. (생략)	----- 7. ~ 17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3